

## ☞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

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면 안됩니다. (법 제4조제4항)

※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## ☞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

· 채용여부 확정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 반환해야 합니다. (법 제11조제1항)

\* 단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

**참고**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
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'14일에서 180일'사이의 기간 중에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

※ 위반 시 시정명령,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·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함 (법 제11조제4항)

\*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

**참고**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 
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위반 시 시정명령,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· 구인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방법, 보관기간, 청구기간 도래 후 파기, 반환비용 부담 등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(법 제11조제6항)

※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## ☞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

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(고용관리과, 일부 지역협력과)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## 채용절차법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담당자 연락처

지역	지청	부서	연락처
서울	본청	고용관리과	02-2250-5815
서울	서울강남	고용관리과	02-3465-8409
서울	서울동부	고용관리과	02-2142-8508
서울	서울서부	고용관리과	02-2077-6120
서울	서울남부	고용관리과	02-2639-2344
서울	서울북부	고용관리과	02-950-9731
서울	서울관악	고용관리과	02-3282-9125
충부	충부(인천)	고용관리과	032-460-4514
충부	인천북부	지역협력과	032-540-5625
충부	부천	지역협력과	032-320-8985
충부	고양	고용관리과	031-931-2908
충부	의정부	고용관리과	031-850-7714
경기	경기(수원)	고용관리과	031-259-0352
경기	성남지청	고용관리과	031-788-1584
경기	안양지청	지역협력과	031-463-7333
경기	안산지청	고용관리과	031-412-1907
경기	평택지청	지역협력과	031-646-1228
강원	강원(춘천)	고용관리과	033-269-3565
강원	강릉지청	지역협력과	033-650-2533
강원	원주지청	지역협력과	033-769-0831
강원	태백지청	지역협력팀	033-550-8602
강원	영월출장소	지역협력팀	033-371-6214
부산	본청	고용관리과	051-860-2152
부산	부산동부지청	지역협력과	051-559-6660
부산	부산북부지청	지역협력과	051-309-1575
부산	창원지청	고용관리과	055-239-6523
부산	울산지청	고용관리과	052-228-1984
부산	양산지청	지역협력과	055-370-0981
부산	진주시청	지역협력과	055-760-6544
부산	통영지청	지역협력과	055-650-1939
대구	본청	고용관리과	053-667-6322
대구	대구서부지청	지역협력과	053-605-9009
대구	포항지청	고용관리과	054-271-6773
대구	구미지청	지역협력과	054-440-2012
대구	영주지청	지역협력팀	054-639-1171
대구	안동지청	지역협력팀	054-851-8018
광주	본청	고용관리과	062-609-8892
광주	전주지청	고용관리과	063-240-3325
광주	익산지청	지역협력과	063-839-0002
광주	군산지청	지역협력과	063-450-0514
광주	목포지청	지역협력과	061-280-0104
광주	여수지청	지역협력과	061-650-0114
대전	본청	고용관리과	042-480-6225
대전	청주시청	고용관리과	043-299-1113
대전	천안지청	고용관리과	041-560-2871
대전	충주지청	지역협력과	043-840-4023
대전	보령지청	지역협력과	041-930-6215
대전	서산출장소	지역협력팀	041-661-5622

고용노동부장관은 인사지원시 직무와 관련된 내용만 기재하도록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 
워크넷에서 활용(고객센터) 서식자료실



www.moel.go.kr

## 표준 이력서(안) 및 자기소개서

〈필수항목〉			
지원자성명	한글		
	영문		
주소 (우편번호) (현재주거지)			
연락처	전화번호	전화	휴대전화
	전자우편		
주요 경력사항	회사명	담당 업무(직무내용)	근무기간(연, 월)
			년 월 ~ 년 월
			년 월 ~ 년 월
자격증 및 특기사항	관련 자격증		(년 월 취득)
			(년 월 취득)
자기소개 등 활동사항			
취업지원 대상자 여부	보훈번호		
	장애종별	장애 정도	장애인 등록번호
저소득층 여부	구분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 수급자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상 보호대상자
	해당여부		

※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, 행위, 연구실적, 특허 등 항목 마련



#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 
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 
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





## 법 적용사업장은?

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(공무원 채용은 제외), 공공기관



2019년 7월 17일, 채용절차법 이렇게 달라집니다.

### 채용강요, 금품수수 등의 금지

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,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, 물품,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·수수하여서는 안됩니다. (법 제4조의2)

※ 위반 시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###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

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\*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. (법 제4조의3)

\* 구직자의 용모·키·체중 등 신체적 조건  
구직자의 출신지역·혼인여부·재산  
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·직업·재산

※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## 채용단계별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# 채용광고 단계

#### 거짓채용광고 금지

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채용광고를 하면 안됩니다. (법 제4조제1항)

※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

####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

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,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,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. (법 제8조)

### 채용 과정 단계

####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

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. (법 제4조제2항)

※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####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

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,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,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. (법 제8조)

### 응시·접수 단계

#### 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

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 (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포함)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을 보급·권장하고 있습니다. (법 제5조)

\* 활용 :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업무 매뉴얼 → www.moel.go.kr 검색 또는 워크넷(고객센터) 서식자료실

####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

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. (법 제6조)

####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?

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. (법 제9조)

\* 다만,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

예시 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의료 견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

※ 위반 시 시정명령,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####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 서류의 접수

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 (법 제7조제1항)

※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,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, 전자우편, 팩스,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. (법 제7조제2항)

#### 입증자료·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

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·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 (법 제13조)

### 채용 확정 단계

#### 채용여부의 고지

또한 채용대상자를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. (법 제10조)

####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

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됩니다. (법 제4조제3항)

※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